

【발표논문9】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

자오 이평(赵 轶峰, 동북사범대학)

개요 : 중국, 한반도, 일본의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 문제를 토론할 때,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공체제’로 이 시기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이해해 왔다. 먼저, 본문에서는 17 세기에서 19 세기까지 한중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아울러 당시 청조와 조선의 관계가 청조와 일본의 관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이른 바 조공체제도 당시 ‘동아시아’의 비교적 평화로운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련 개념과 방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 청대 ; 중조관계 ; 중일관계 ; 조공체제 ; 동아시아

Title: The Characteristics of China-Korea Relationship and Its Connection to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e term “Eastern Asia” has been a popularly used term in the discussion of pre-modern history especially in dealing with China, Korea, and Japanese relationships. Tributary system, accordingly, is commonly used to explain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that times. By first of all pointing out the major features of the seventeenth to nineteenth century China-Korea relationship,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relationship of Qing China with then Korea was profoundly different from that with Japan. The relatively peaceful order in “Eastern Asia” during that era cannot be fully interpret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so-called tributary system either. Moreover, some relate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ill be discussed.

Keywords: Qing Dynasty; China-Korea; China Japan; Tributary system; Eastern Asia

현대 ‘동아시아’는 하나의 지정학적 구역으로서 17세기 중엽까지 거슬러올라가 보면, 커다란 역사 변천 가운데에 놓여있었다. 중국에서는 명청 왕조 교체로 사회조직, 정치제도, 민족관계, 문화 풍토 등 여러방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각국과의 외교질서도 재수립되었다. 명조와 조선, 류큐, 안남, 란쌍의 번봉관계는 청조와 이들 나라의 번봉관계로 전환되었다. 명대 후기는 일본과의 국교가 없었고 일본은 에도 막부 이후 ‘쇄국’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청, 일

양국은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정부간 왕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 중국과 조선 등과의 조공관계 구축 및 일본의 ‘쇄국’, 이는 모두 17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의 배경 조건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이 상대적 평화시대는 또한 동서방 문명 실력이 대비적으로 역전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학술계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관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 연구가 이미 풍성하게 있으나 이 시기 중조 봉공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중조, 중일 관계의 차이를 통해 ‘조공체계’의 재검토도 기대할 수 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재고를 통해 ‘동아시아’를 이해함에 있어 ‘조공 체계’라는 통섭적 개념이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청조시기 중조관계의 특징

청조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공격하였고 중원에 진입하기 전 이미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명조로부터 획득하였다. 그에 비해 명조와 조선 사이의 조공관계는 정벌과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된 조선 왕조가 주동적으로 여러번 호소한 정황하에 형성된 것이다. 자발성과 수동성, 평화와 정벌, 명칭 두 왕조와 조선 왕조와의 조공관계 형성기의 이러한 차이점은 조선 왕조의 중화인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조는 중원문화의 국가적 체현이라고 여겨졌으며 청조는 예악문화가 조선보다 못한 오랑캐라고 여겨진 것이다.

비록 시작 시점의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명청시기 모두 중국과 조선 왕조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한 지리상, 경제상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기에 모든 것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조는 중원의 국세를 안정시킨 후 조선에 대한 정책을 명대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하고 유가문화전통에 대하여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표시하였다. 청과 조선 모두 신중하게 조공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청조 말기까지 이어져 나갔다. 청조와 조선의 조공 관계를 명대와 비교하면 기본 패턴의 전후 계승 전제 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청, 조 조공관계는 청조가 기타 조공 국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조공 관계가 없는 국가간의 국제 관계에 어떠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가. 이러한 점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문제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① 책봉, 인수(印綬), 책력, 상설사절관

승덕2년 (1637) 청군이 조선을 정복하고 “封其国主为朝鲜国王, 赐龟钮金印, 给诰命, 封王妻为妃, 王子为世子, 赐裘帽, 貂皮, 鞍马¹”하였다. 홍타이지는 “既定藩封, 宜申新命。爰销传国之印, 用颁同文之符。特遣使臣, 赍捧印诰, 仍封尔李倧为朝鲜国王。嘉乃恭顺, 金章宝册, 重新作我藩屏, 带砺河山不改, 立一时之名分, 定万载之纲常。天地无私, 冠履不易。王其洗心涤虑, 世修职贡之常, 善始令终, 永保平康之福” 하였다.² 청조 초기에 수많은 조공국 왕들은 모두

¹ 《대정통일지》 제421권.

² 《황조문헌통고》 제293,4권. 예고일.

인장을 수여 받았으며 그 형상은 “平台方三寸五分，厚一寸九.”이었다.³ 그러나 유일하게 조선 국왕의 인장은 금인, 거북모양 손잡이, 지영전 인신으로 되어있었고 안남, 류큐, 섬라 국왕의 인장은 금장식으로 된 은인장, 낙타모양의 손잡이, 상방대전 인신이였다.⁴ 청조 국내의 규칙과 비교하면 친왕에게는 금인장을 내리고 군왕에게는 금장식으로 된 은인장을 내리는데 조선 국왕을 존중하여 친왕으로 보고, 안남, 류큐 등 국왕들은 군왕으로 본 것이다.⁵

번봉국으로서 조선은 중국의 역법을 따라 행하여야 하였다. 순치18년 (1661) “朝鮮国每年十月朔，遣使賚咨赴部，恭领时宪书。豫札钦天监封送仪制司，本司郎中朝服于司署 颁发，来使跪领，賚回本国”⁶이라 하였다.

모든 조공국 가운데 조선이 유일하게 중국 내에 상설 사신 접대 기구가 있었고 이는 성경에 위치하여 성경 예부에 속하였다(“朝鮮使館在德盛門內，屬盛京禮部”⁷). 봉황성에도 송영을 하기 위해 송영관 3인, 주객관 1인, 조선 통사 2인, 중강 세무 감독 1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 왕래 직관을 전문적으로 설치 하였다.⁸ 건륭 황제는 건륭 8년 (1743), 19년 (1754), 43년 (1778), 48년 (1783) 에 성경으로 수차례 갔었으며 조선 왕조도 대신을 파견하여 영접에 참여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건륭 황제는 어서 “식표동번” 편역을 하사하기도 하였다.⁹

번봉관계의 설립 초기에는 조선이 청조에 입공하는 규칙을 형성하였는데 강희제 이후 점차 감면하였다. 승덕 2년에는 매년 조공할 물품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黃金百兩，白金千兩，苧布二百疋，各色棉絀四百疋，各色木棉 布四千四百疋，龍紋席二，花席二十，鹿皮百，水獺皮四百，豹皮百四十有二，青黍皮三百，佩刀十，大小紙五千卷，米百石。萬壽聖節禮物各色苧布三十疋，各色棉絀七十疋，龍紋席二，各色花席六十，豹皮十，水獺皮二十，白棉紙二千卷，厚油紙十部。元旦，冬至二節，減棉絀三十疋及水獺皮，油紙二種。皇后千秋節，苧布三十疋，棉絀三十疋，花席三十。元旦，冬至二節加螺鈿梳函一具”。¹⁰ 이후 점차 감면하기 시작하여 강희 3년(1660)에 “外國慕化來貢方物，照其所進收受，不拘舊例”¹¹ 라 하였고, 강희 32년 (1693) 에는 조선이 정액 이외에 조공 30대를 진상한 것을 이유로 “年貢內黃金百兩及藍青紅木棉嗣後永著停止”¹²가 정해졌다. 강희 51년 (1712) 조서에서는 “朝鮮國慎守封圻，恪循儀度，四十餘年來未嘗稍懈，朕用嘉美，將該國貢典屢加裁減，至于甚輕。今貢物內有白金千兩，紅豹皮百四十二張，猶恐艱于備辦，嗣後將二項永停貢獻。” 라 명하였다.¹³ 옹정 원년 (1723), “朝鮮貢物……視明時貢物已免過半，今惟年貢內可減去青黍皮三百，水獺皮百，木棉

³ 《흠정대청회전조례》 제63권.

⁴ 《흠정대청회전》 제28권.

⁵ 앞글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체되어 있는 글씨체는 건륭시기에 제정한 제도에 의거 한 것이다. 건륭13주준, “본조정에서는 대내보문 옥문 전서, 친왕보문, 군왕인문, 조선국왕인문 및 내외 문직 대소관아 인서 대전에 올린 관방조례, 내외무직 대소관아 인서 전문에 올린 류업 관방조례 등을 정례하여…… 금일 친왕금보, 군왕금은 인도, 조선국왕 금인 등은 모두 자영호, 종인부, 연성공, 군기사부담당처, 내무부, 한림원, 육부, 이반원, 도찰원, 총리삼고사부금의위, 성경오부은인, 등은 모두 대전에 올린다.” 또한 청조 초기 조공 국왕 인장은 만주 문자만 있고 한자는 없었고 순지십년 시기가 되어야 아래와같이 복준하였다.”조선국왕 원령 인문은 청조 문자만 있고 한자는 없다, 예부에서 청찬문 금인을 개도하여 그 왕에게 선물해 드리고 옛 인문을 납부하였다.”

<흠정대청회전조례> 제 63권 참조.

⁶ 《흠정대청회전조례》 제62권.

⁷ 《대청일통지》 제36권.

⁸ 《대청일통지》 제37권.

⁹ 《대청일통지》 제421권; 《흠정성경통지》 제9권.

¹⁰ 《대청일통지》 제421권; 《흠정성경통지》 제9권.

¹¹ 《대청일통지》 제421권; 《흠정성경통지》 제9권.

¹² 《대청일통지》 제421권; 《흠정성경통지》 제9권.

¹³ 《대청일통지》 제421권; 《흠정성경통지》 제9권.

布八百疋，白棉紙二千卷，余貢如常”¹⁴라 하였고, 옹정 5년(1727)에는 “朝鮮年貢之例，每年貢米百石，朕念該國路途遙遠，運送非易，着減去稻米三十石，糯米三十石，每年進貢糯米四十石，足供祭祀之用，永著為例”¹⁵라 하였다.

② 상시적 의례 참여

경조사의 조공 사신은 청조의 여러 외교적 의례 행사로서 참여하였다. 이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선 사신이 예례 행사에 참여한 범위는 기타 조공 사신들보다도 더 많았으며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 졌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다.

우선 국자감어강, 참가, 견학이 이루어졌다. 청황제는 친히 강학을 행할때 조선 사신은 참여하였으나 타국가의 사신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건륭 50년(1785) 2월,

“詔建辟雍工成，皇上親詣國子監釋奠先師，御新建辟雍講學……上親登御論，諸王公卿以下暨多士，朝鮮國使臣環伏聽講。”라는 기록이 보인다.¹⁶ 또한 “起居注官四人，位西南隅，亦東面侍儀；給事中，御史各二人，位東西檐柱內聽講。各官位橋南甬道，東西六堂。師生各序立堂階下。朝鮮國使臣立甬道西班各官之末”¹⁷로 하였다.

다음으로 황실의 장례에 참여 하였다. 청대 태종 홍타이지가 승하하였을때, “鹵簿全設，內外親王以下，佐領以上，及朝鮮國世子和碩福晉以下佐領命婦以上，鹹成服。”¹⁸. 순치제의 붕어했을 때, 청은 근위병 2인을 조선에 보내 통고하였다. “至日，令遵例制服。在京朝鮮等國使臣工部給孝服，免其齊集。”¹⁹ 강희제가 붕어했을 때 (삼월) “十七日，朝鮮所貢祭品，香燭設幾筵前，楮帛積燎，位王以下滿漢文武四品官以上，在壽皇殿大門外齊集，按翼排班。朝鮮使臣戴展翅烏紗帽，素服角帶，鴻臚官引立右翼班末。祭時引來使於仗南北向立，贊行三跪九叩禮，退立原處”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옹정제가 붕어했을 때, “乾隆元年二月十四日奏准，朝鮮國王遣陪臣恭詣世宗憲皇帝幾筵前進香，於十七日行禮。是日，設世宗憲皇帝鹵簿於雍和門外，讀祝官恭奉朝鮮國祭文進雍和門，豫設於永佑殿簷下黃案上……朝鮮國陪臣等官戴展翅烏紗帽，素服角帶，鴻臚寺官引立於右翼之末。內府官陳設祭品，點朝鮮國所進香燭。畢，鴻臚寺官引朝鮮國陪臣等官至儀仗之南，向北立，聽贊行禮儀，與雍正元年同。”라 하였다.²¹ 황태자의 상례 및 미 분봉된

황자의 장례에는 “朝鮮使臣在京者，素服七日”²²하였다. 황태후의 사후에는 “頒遺誥於直省及朝鮮國，誥到日，各照例成服，凡二十七日” 하였다²³

또한 천수연에 참가하였다. 건륭 10년(1745) 정월 초엿새날 건청궁에서 천수연이 열렸는데 “凡宗室王貝勒以下文武大臣官員，予告大臣官員，覃恩受封文武官階紳士兵丁耆農工商，外藩王公臺，

¹⁴ 《대정일통지》 제421권 ; 《흙정성경통지》 제9권.

¹⁵ 《대정일통지》 제421권 ; 《흙정성경통지》 제9권.

¹⁶ 《흙정국자감지》 제8권, “예학이·임용”.

¹⁷ 《흙정국자감지》 제8권, “예학이·임용”.

¹⁸ 《흙정대청회전조례》 제85권.

¹⁹ 《흙정대청회전조례》 제87권.

²⁰ 《흙정대청회전조례》 제85권.

²¹ 《흙정대청회전조례》 제86권.

²² 《흙정대청회전》 제53권.

²³ 《흙정대청회전조례》 제86권.

回部番部土官土舍, 朝鮮賀正陪臣, 共三千人。坐席各以品級班位, 凡八百筵.”라는 기록이 있다.²⁴ 건륭 49년(1784) 정월에는, “命朝鮮國王酌派年在六十以上陪臣二三人充正副使來京, 預新正千叟燕盛典.”가 준비되어 건륭 50년(1785) 정월, 건청에서 천수연이 열려, “朝鮮正使陪臣李徽之, 副使陪臣薑世晁並預燕賦詩, 恩賞有加”²⁵라는 기록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호의 수요이다. “朝鮮國王李侖諡莊穆, 朝鮮國王李淏諡忠宣, 朝鮮國王李柵諡莊恪, 朝鮮國王李昞諡恪恭, 朝鮮國王李吟諡莊順。朝鮮國王世子追封王爵李湊 諡恪潛.”²⁶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③ 일월식 구호

강희 60년(1721)에 흙천감이 윤년 유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다고 추측하여 “京師, 盛京, 朝鮮日食四分五分餘者救護, 其日食二三分者皆不頒.”가 결정되었다.²⁷ 건륭 30년(1748)에는 “嗣後凡遇日月交食, 無論一分以下及二分三分, 皆由欽天監前期五月具題請旨, 勅部通行直省布政使司, 盛京奉天府, 轉行督撫提鎮將軍所屬各衙門並朝鮮國, 一體欽遵。三分以上者救護, 不及三分者不行救護。仍繪圖進呈。”²⁸하였다. 이러한 구호는 기타 번봉국, 조공국들은 모두 관여하지 않은 반면, 청국과 조선만이 행하는 행사가 되었다.

④ 팔기 참여

청조 건립 초기에는 여러 조선인들이 청조에 들어오고 점차 팔기 계통으로 융합되었으나 장기간 조선인 신분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중 비교적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정황기와 정홍기의 조선좌령이었다. 정황기는 제4참령 제9좌령이 “國初以 朝鮮來歸人丁編立”라 하였다.²⁹ 그 중 정황기는 내무부 삼기중의 하나로서 처음에는 영시위 내대신에 속하였고 강희 13년(1674)에 내무부 총관으로 바뀌어 졌고 강희 34년(1695)에는 또다시 영시위 내대신에 속하게 되었으며 옹정 원년(1723)에는 다시 내무부 총관으로 되돌아 갔다.³⁰ 조선 좌령은 청황제 친위부대에 속하였고 이것은 궁정시위를 위하여 복무하는 점뿐만 아니라 장비면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선 좌령 관할부대는 전문적으로 조총을 연습하였는데 이는 내무부군 중의 정예이다. 강희 6년(1667)에, “기병에게 각기 궁 하나, 채찍 일매, 화살 오십개를 주었다. 기병 2인 마다 각기 장총 하나를 주고 유일하게 정황과 정홍기조선 좌령 기병에게는 각기 조총을 주었다.”³¹ 고 하였다. 강희 16년(1677)에 “驍騎各給弓一, 橐鞭一, 矢五十。每驍騎二人各給長槍一, 惟正黃, 正紅旗朝鮮佐領驍騎各給鳥槍一”³² 고 하였다. 강희 30년(1691)에는, “設食三兩錢糧頭目七名,

食二兩錢糧鳥槍人三十三名, 每名各月給馬幹銀一兩五錢。又設食二兩錢糧承應奇炮人四名,

²⁴ 《황조통전》 제57권.

²⁵ 《황조통전》 제60권; 《팔순만수성전》 제30권, 제32권.

²⁶ 《황조통지》 제53권.

²⁷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2권.

²⁸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2권.

²⁹ 《흙정팔기통지》 제5권.

³⁰ 《황조문헌통고》 제181권.

³¹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74권.

³² 《황조문헌통고》 제181권.

專司聖駕巡幸隨侍鳥槍，豫備鉛彈，鐵砂，火藥，火繩及試演槍炮並南苑打鵝，均屬朝鮮佐領管轄”³³로 하였다. 정황기, 정홍기에는 당초 조선 좌령이 각 한 명씩 배치되다.³⁴ 강희 34년(1695)에는 정황기에 조선 좌령 일인을 추가하였다.³⁵ 조선 좌령은 기병영에 속하며 “凡內府三旗之制……驍騎營掌關防，參領三旗各五人，以司官兼攝副參領，各五人，滿洲佐領各五人，旗鼓佐領各六人，正黃旗朝鮮佐領二人，驍騎校正黃旗十有三人，鑲黃，正白二旗各十有一人，共領催百四十人，三旗三十內管領下共領催百二十人，驍騎五千二百五十人”이었다.³⁶ 옹정 9년 (1731), 내무부 삼기에 대해 “每旗各增設護軍二百名編為鳥槍護軍……其見有鳥槍驍騎六百名，亦令照依鳥槍護軍學習連環等技。計新舊護軍共千二百名，應按佐領內管領分隸額數，滿洲十五佐領，朝鮮二佐領下各定為二十五名旗鼓……”³⁷라 하였다. 이듬해에도 “正黃旗朝鮮二佐領著為世管佐領。嗣後遇員闕，該參領開送適派子孫並家譜，由內務府引見補授。”³⁸는 명이 내려졌다. 건륭 9년 (1744)에는 “朝鮮佐領員闕，照世襲佐領之例奏補。朝鮮佐領下驍騎校員闕，於朝鮮佐領下無品級頭目及領催內遴選補授，論年開列.”³⁹하였다.

⑤이재민구조

강희 36년(1697)에 조선 숙종이 국내의 재난을 받고 청조 황제에게 상서를 올려 중강지방에서 미곡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청하였다. 예부에서는 비준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강희제는 “朝鮮國王世守東藩，盡職奉貢，克効敬慎。今聞連歲荒歉，百姓艱食，朕心深為憫惻。彼既請糴，以救凶荒，現今盛京積貯甚多，著照該國王所請，於中江地方令其貿易”⁴⁰이라며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호부 侍郎貝和諾를 봉천에 파견하여 조선의 쌀 매매를 감독하였다. 강희 37년 (1698)정월, 吏部右侍郎陶岱에 명하여 조선에 보낼 쌀 삼만석 중 일만석은 사사하고 나머지 2만석을 저가에 판매하였다. 숙종은 “皇上創開海道運米，拯救東國，以蘇海濱之民，饑者以飽，流者以還，目前二麥熟稔，可以接濟，八路生靈，全活無算.”이라 상주했다. 강희 황제는 《해운진제조선기》를 작성하여 “遂於次年二月，命部臣往天津截留河南漕米，用商船出大沽海口，至山東登州，更用雞頭船撥運引路，又頒發帑金，廣給運值，緩徵鹽課，以鼓勵商人，將盛京所存海運米，平價貿易，共水陸運米三萬石，內加賚者一萬石，朝鮮舉國臣庶，方藜藿不充，獲此太倉玉粒，如坻如京，人賜之食，莫不忭舞忻悅，凋瘵盡起。該王具表陳謝，感激殊恩，備言民命續於既絕，邦祚延於垂亡，蓋轉運之速，賑貸之周，亦古所未有也……朕念朝鮮自皇祖撫定以來，奠其社稷，綏其疆宇，俾世守東藩，奉職修貢，恩至渥矣。茲者告饑，不憚轉輸數千裏之勞，不惜糜費數萬石之粟，環國土而戶給之，非獨一時救災

³³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³⁴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³⁵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02권、제164권. 《황조문헌통고》 제86권에 의거하면 “신등십안”을 “처음보령하여 매기 만주삼인, 기고사인.

강희34년에는 각 2인일 추가한다. 정황기는 또 조선 좌령을 2인 추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조선 좌령 2인”은 일인의 실수로 오해를 한적도 있었다.

³⁶ 《흙정대청회전》 제91권.

³⁷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³⁸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³⁹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⁴⁰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拯患，實所以普澤藩封，而光昭先德也”고 하였다.⁴¹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차후 고증이 더욱 필요하나 조선의 재난에 대한 구제활동은 확실한 사실이었다.⁴² 이러한 구제는 청조와 기타 나라들 사이에서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⑥상설화하는 호시

번봉관계의 상징인 조공에 따른 특정 무역을 제외하고 중국 조선 사이는 청조 초기부터 상시적 호시가 존재하였다. “凡鳳凰城等處官兵人等往義州市易者，每年定限二次，春季二月，秋季八月寧。古塔人往會寧地方市易者，每年一次。庫爾喀人往慶源地方市易者，每二年一次，由部差朝鮮通事官二人，寧古塔官驍騎校筆帖式各一人前往監視。凡貉，獾，騷鼠，灰鼠，鹿，狗等皮，許其市易外，貂，水獺，猓，獾，獺，江獺等皮不許市易。定限二十日即回”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전부 청국인이 조선과 무역을 행한 것이다.⁴³ 순치 9년(1652)에, “朝鮮國人來京貿易者奏聞方准貿易.”⁴⁴로 하였다. 강희제는 내지 상민들이 조선으로 가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강희 28년(1689)에 “內地商民船至朝鮮者，停其解京，除原禁貨物外，聽其發賣。回籍，仍將姓名籍貫人數貨物於貢使進京時匯開報部。如其船遭風破壞，難以回籍，令該國王將人口解送至京。”라 하였다.⁴⁵ 이밖에도 중강 지방의 중조 무역은 더욱 상설화되었다.⁴⁶ 중강무역은雍正 12년(1734)에 허가되어 상제는 매년 은 3294냥이었다.⁴⁷ 이러한 액수는 중국 내지 상인에게서만 징수 하였고 조선인은 세금을 면하였다. “凡朝鮮國貢使往還與內地客商互相貿易，不拘何項貨物，內地商人計價一兩收稅銀三分，朝鮮人免稅”라 한 것이다.⁴⁸ 강희,雍正시기에 조선인이 중국 상인 胡嘉佩에게 거액의 체납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호가패 등은 국고금을 결손한 결과, 조선인이 지불하지 못한 은 육만여냥을 장부에서 삭제할 것을 신청하였다.雍正황제는 호가패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을 우려하여 “令行文詢問，並令內地貿易之人與朝鮮賒欠之人在中江地方質對明白，使中外之人不得互相推諉，以息擾累”라 명하였다. 이후 성경 예부는 조선에 조회하여 조선인이 확실히 이러한 빚이 있음을 확인하고 “其朝鮮國人應還之銀，著從寬免追.”⁴⁹ 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측 무역자 호가패 등은 국고금을 받은 특허 상인이라 할 수 있으나 또한 팔기 관병과 보통상인들도 있었다. 건륭

⁴¹ 《황조문헌통고》 제33권.

⁴² 이번 진멸에 관하여 앞의 글 《황조문헌통고》에서는 결수록 이도로 쌀 3만석을 제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성조인황제어제문집》에서는 초기 운송한 쌀의 수량은 아래와 같다: “유내각에서 조선국쌀을” 처음으로 운송한 쌀의 수자는 아래와 같았다: “내각에서 조선으로 쌀을 운송하여 보냈고 총 삼만석을 운송하였는데 일만석을 조선국에 사하고 이만석을 판매하였다.”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2집 17권 참조. 그러나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중 기재된 《해운진제조선기》에서 관련되는 한마디의 문자를 이렇게 기록 하였다: “명조년 2월까지 신하를 친진에 주문시켜 하남 조세양곡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상선으로 태고 해구에서부터 산둥 등구까지 나갔으며 더욱히 배머리를 이용하여 발운하고 길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공금을 반포하고 널리 계속 반입하였으며 염세를 지연하여 징수하는것을 통해 상인을 격려해주고 성경에 있는 해운 쌀을 평가무역, 수륙에서 쌀 사만석에 일만석을 더한것을 운송하고……”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2집 33권 참조. 《흙정대청회전조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 흥년에, 중경에서 개시할 것을 청하였다. 황명의 비준으로 모아서 쌓아두 미곡 사만석을중강으로 수륙운송하여 대신 일인이 가서 감사하고 다시 쌀 만석을 보내 보상을 하였다.”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을 보면 오만석을 이렇게 공운 하였다. 또한 왕시진의 <거의록>에 의거하면 “조선 왕조 이순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것을 상서하여 황명으로 쌀 이만석을 사하 받았고 또한 아하성 아가씨묘 두곳에 공양미 이만석을 중강무역으로 운송하였으며 호부 우시랑박과 노왕감래로 장로 염삼령에게 잉여금 오천냥으로 쌀 이만석을 사게 하였다. 이는 등주부모 지방에서 배머리를 조선무역으로 향하게하고 사무우시랑으로 감운을 향하기 하였다.” 왕시진 <거의록> 제 29권 참조. 이렇게 총 쌀 육만석을 운송하였다.

⁴³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⁴⁴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⁴⁵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⁴⁶ 《흙정대청회전》 제65권.

⁴⁷ 《흙정대청회전조례》 제48권.

⁴⁸ 《흙정대청회전조례》 제47권.

⁴⁹ 《세종선황제상유내각》 제61권;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원년 (1736) 에 “向來八旗臺站官兵，於每年二，八月，攜帶貨物前往中江與朝鮮貿易。朕思旗人皆有看守巡察之責，無暇貿易，且亦不諳貿易之事，遠人到邊，恐致稽遲守候，多有未便。嗣後著內地商民與朝鮮國人貿易，即令中江管稅官實力稽察，務須均平交易，毋得需索滋擾”라 하였다. 이듬해, 조선 국왕은 “奏請中江貿易令內地商民多有未便，懇照舊例。奉旨著照所請，仍循舊例，與兵丁按期交易.”⁵⁰라 상주하였다. 이처럼 청대 중국과 조선은 조공과 무역을 병행한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여섯가지 이외에 중조 사이에는 여러가지의 왕래 방식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양쪽에서 상대방측 상인의 배가 표류하여 도달하면 모두 구조하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호송하였다.⁵¹ 해상에서 고기잡이 배가 국경을 넘으면 상대방 나라에 의한 조사가 허가되었다.⁵² 속중이 눈병이 걸려 중국에서 약품을 구매하고자 하자, 청은 관리를 파견하여 약을 조선에 보냈다.⁵³ 청조는 여러차례 사절의 상경 의례를 통합하여 조선의 부담을 경감시켰다.⁵⁴ 조선의 시가집을 수집하기 위해 청이 역인을 파견한 경우도 있다..⁵⁵ 양국간의 교류가 광범위하고 밀접해지면서 청조 정부 체제 내에 설치된 조선과 관련되는 기구 및 직위도 기타 조공국보다 더 많아졌다. 예를 들면 예부에 속하는 회동 사역관이 설치되어 “朝鮮通事官初置六人，後增至十六人……朝鮮訳學置訳生二十人，於下五旗朝鮮子弟內選充.”하였다.⁵⁶ 성경에 속해있는 봉황성에서는 환송 조선 관리 3명의 직위가 마련되었다.⁵⁷ 또한 청대 중국 이외의 조선, 안남, 류큐 에서 과거제가 실시되었으나 동시대 일본에서는 과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2.중조 관계로부터 보는 청조시기 ‘동아시아’ 질서 패턴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청대 중조 사이는 청조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였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양국의 통치자 사이의 감정이 어떻게 가까운지 와는 상관없이 양자 사이 관계의 성격이 기타 국가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청대의 조공국들은 회전에 따르면 “凡四夷朝貢之國，東曰朝鮮，東南曰琉球，蘇祿，南曰安南，暹羅，西南曰西洋，緬甸，南掌，皆遣陪臣為使，奉表納貢來朝。凡勅封國王朝貢諸國 遇有嗣位者，先遣使請命於朝廷。朝鮮，安南，琉球欽命正副使，奉勅往封。其他諸國，以 勅授來使齎回，乃遣使納貢謝” 하였다.⁵⁸ 이전에 조선 국왕, 왕비, 세자들을 봉하는 사절은 “皆三品以上官充正副使，服色，儀從各從其品”⁵⁹로 정해졌다. 안남, 류큐의 경우는 “以翰林院，科道，禮部五品以下官充正副使，特賜一品麒麟服，以重其行，儀從皆視一品。

⁵⁰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 《황조문헌통고》 제33권.

⁵¹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3집 7권 ;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 《황조문헌통고》 제33권 ;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⁵²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4집 1권.

⁵³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⁵⁴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 《성조인황제성훈》 제35권 ; 《서종선황제상여내각》 제87권 ; 《서종선황제상여내각》 제114권

⁵⁵ 《흙정국가감지》 제62권 ; 왕시진 ; 《지북여담》 제18권.

⁵⁶ 《흙정역대직관표》 제11권.

⁵⁷ 《황조문헌통고》 제84권.

⁵⁸ 《흙정대청회전》 제56권.

⁵⁹ 《흙정대청회전》 제56권.

使歸，還其服於所司”로 하였다.⁶⁰ 조공 기간과 관련하여 “朝鮮歲至，琉球間歲一至，安南六歲再至，暹羅三歲，蘇祿五歲，南掌十歲一至，西洋，緬甸道遠，貢無定期”라 하였다.⁶¹ 건륭 43년 (1778)의 《황청직공도》에서는 ‘오랑캐’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복식과 용모가 그려져 있다. 1권은 “외번”으로 조선, 류큐, 안남, 섬라, 술루, 란쌍, 미얀마, 대서양 여러나라, 소서양, 영국, 프랑스, 【구서】, 일본, 반자르마신, 브루나이, 조호르, 네덜란드, 러시아, 송【월거】【월로】, 캄보디아, 루손, 자카르타, 말라카, 蘇喇, 厘利晚이라는 순번이었다. 이러한 순번을 통해 이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은 “외번”의 수위에 위치하여 조선과 청조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보여 준다. 둘째, 청조는 “조공”사무를 생각할 때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다. 현재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일본은 동일한 “동아시아”에 속하는 조선이나 류큐 뒤에 열거되었을 뿐아니라 또한 섬라, 루손, 란쌍, 미얀마 뒤에 놓여 있는데 심지어 유럽주의 대서양, 소서양, 영국, 프랑스 (실제로는포르투갈을가리킨다) 뒤에 있다. 《황청직공도》는 또한 각 국의 남녀 그림 뒤에 글을 더하여 조공에 관한 사정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 대해서는 억지스러운 서술이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굳이 “宋以前皆通中國，明洪武初，常表貢方物，而夷性狡黠，時剽掠沿海州縣，叛服無常，俗崇釋信巫”라 하고, 청 이후 중일 양국간의 어떠한 조공, 혹은 정부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⁶² 청대 중국 외교관계도를 보면 조선은 특히 친밀한 대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류큐, 안남, 섬라, 술루, 란쌍, 미얀마 등 수많은 책봉국들이 있었으며 또 그다음으로는 청조가 조공관계로 여긴 대서양 등의 국가였는데 일본은 청조 이전의 역사상에서 조공 배열에서 제일 마지막 그룹에 속하였다.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범위를 사용해 17,18세기의 국제질서를 검토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이러한 종류의 국제관계와 ‘조공체제’의 개념이 반드시 겹쳐 지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중국, 조선, 일본을 ‘동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구성원으로 한다면 건륭시기의 중국은 ‘동아시아’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일체화, 특수화한 “동아시아”질서가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명대에는 애초 ‘아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단어는 명조 말기 유럽 전도사가 세계 오대주 지식을 소개할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줄리오 알레니(艾儒略)의 《직방외기》 가운데 ‘아시아총설’에서 “亞細亞者，天下一大州也，人類肇生之地，聖賢首出之鄉⁶³”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왔을때 《곤여만국전도》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오대주설을 이야기하였다. 남회인의 《곤우도설》에는 “亞細亞，天下一大州，人類肇生，聖賢首出。其界……”⁶⁴이라고 하여 명조 말기 사람들은 이미 ‘아시아주’라는 개념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동아시아’는 아시아 동부를 가리키는것인데 오대주의 개념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이에 관한 지리상 지식이 애매하였기에 오랜 기간 ‘아세아’를 자신의 생각에 녹이지 못하고

⁶⁰ 《흙정대청회전》 제56권.

⁶¹ 《흙정대청회전》 제56권.

⁶² 건륭칙찬 : 《황청직공도》 제1권.

⁶³ 예여략 : 《직방외기》 제1권, 《아시아총설》.

⁶⁴ 남회인 : 《여우도설》 하권.

하나의 국제관계상 지리적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건륭기 편찬된 《명사》에 오대주가 언급되는데 “其說荒渺莫考。然其國人充斥中土，則其地固有之，不可誣也”⁶⁵ 라고 인식되었다. 《사고전서》총목에서는 “其說分天下為五大州，一曰亞細亞州，其地西起那多理亞……所述多奇異，不可究詰，似不免多所誇飾。然天地之大，何所不有，錄而存之，亦足以廣異聞也”라고 하였다.⁶⁶ 이것은 일종의 기록의 차원에서 의문을 남긴 채 비교해 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조차 인식되지 않은 시기, ‘동아시아’도 물론 사유와 언어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국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는 지리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 관심을 역사에 투영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 현대 어역으로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면 역사 근원의 원래 양상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청대 중조관계속의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 하는것도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책봉, 인수는 조공관계의 정식 표징이다. 청조는 조선을 제외하고 안남, 류큐 등 국가에도 책봉, 인수 하였으나 기준은 대폭 삭감되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청조가 ‘직공’ 항목 하에 유럽주 수많은 국가들을 청조로 입공하는 국가로 편입시켰지만 대응하는 책봉이나 인수 등은 없었다. 이것은 ‘직공’ 혹 ‘조공’ 관계가 일종의 광범위한 국가교류의 개념이며 청조의 주변 질서 이념과는 겹쳐지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책봉’은 청의 국가간 관계질서의 함의를 더욱 명확히 가지고 있다. 조공을 하고 책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청조의 관점에서 말하면 단지 청조의 숭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유대관계는 아니었다. 청조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고 또한 어떠한 권리도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단순한 조공국이 입공을 중지하여도 청조는 이를 돌려놓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조공과 책봉이 모두 이루어지는 나라는 청조의 번속국이 되어 청조는 이러한 국가들에게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공 행위는 일종의 예의성 행위로서 횡수, 규모, 및 부수적인 무역행위는 제약을 받았고 청조와 조선간의 무역은 오히려 상시적인 경로가 있었으며 이는 조공 의례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대의 대외관계중 책봉, 수인, 역법 하사에서 속지국이 제일 친근하고 조공국은 그 뒤이고 비조공국은 또 그 뒤이다. 책봉국 가운데 조선이 제일 친밀하였고 청에 상주하는 사절을 파견해 청조의 중요 예의활동도 참여하였으며 비외교 성질의 의례 축전에도 참여하였다.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인이 팔기조직에 참여하는데에 관하여 약간의 미묘한 정황들을 주의 하여야 한다. 첫째, 이러한 조선인은 청조 초기 팔기로 편입되어 오면 다시는 조선 왕조를 대표하지 못한다, 즉 명청조와 조선 국가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조선인의 신분 인증을 유지하고 만주,몽골,한인들 사이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청조와 조선 왕조관계에 관섭하며 현대의 교민과 비슷하다;셋째, 이러한 조선인들은 청조에서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으며 만족이나 몽골족과 비슷하고 한인보다도 높으며 황제의 신임을 더욱 받기도 하였다. 앞 문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의 좌령들은 내무부 삼기에서 황제의 근친 호위사를 대체 하였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서술한 세 점들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밖에 강희 17년(1678)에는 좌도어사 과사해가 “滿洲, 蒙古,

⁶⁵ 장정옥등: 《명사》 제326권, 열전제214권,외국7.

⁶⁶ 《흙정사고전서총목》 제71권

朝鮮人毋許賣與漢軍，漢人，八旗各佐領下出戶人毋許出本佐領外，應著為禁令，詔從所請。”⁶⁷ 라 한바와 같이 조선인의 지위가 만주, 몽골인과 동등하고 한군과 한인보다 높은것을 설명하고 있다.

청조 초기부터 19세기 중엽에 중일간에는 어떠한 형식의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책봉관계, 조공관계, 혹은 현대 국가간의 평등한 왕래관계도 없었다. ‘조공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부간의 교류를 핵심으로한 개념이었으며 일본은 청대 ‘조공체제’안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페어뱅크가 제창한 ‘조공체제’와 그 후의 수정해석을 포함하여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질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청조 전기에 일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역사상 정부와 민간사이의 왕래도 있었으며 전쟁도 있었고 모두 조선과 밀접해 있어 자연히 상호관계가 존재하였다. 명청 교체시기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국내로 주의를 돌렸으며 아시아 대륙 진출을 중단하였다. 또한 천주교 침투를 막기 위해 ‘쇄국’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중일 정부간에 정식적인 왕래도 무장 충돌도 없었던 것이다. 이시기에 중일 국제관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역이다. 청조는 백은, 동화의 복수 화폐 체제를 시행하였으나 청조 국내에는 동이 부족하였다. 청조 정부는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동무역을 하는것을 격려하였고 심지어 관청 은을 발포하여 이러한 무역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일본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무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강희32년 “以日本洋銅饒裕，令安徽，江蘇，浙江，江西等省各商攜帶綢緞，絲斤，糖，藥往彼處市銅，分解各省，每歲額市四百四十三萬餘斤。”⁶⁸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사료에 “日本當明時素擾內地，今洋銅交市，海波不揚。”⁶⁹라 하였다.

일본도 이러한 동무역에 적극적으로 중국 상인이 일본에 올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청조 문헌에서는 이를 “왜조”라고 칭하였다. 양국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만약 일본의 배가 중국으로 표류해 온다면 청정부에서는 원조를 제공, 이들을 본국으로 호송하여 돌려보냈다. 강희32년 9월,

“兵部議覆廣東廣西總督石琳奏稱，風飄日本國船隻至陽江縣地方，計十二人，請發回伊國。應如所請。上曰：外國之人船隻被風飄至廣東，情殊可憫，著該督撫量給衣食，護送浙省，令其歸國。”⁷⁰

라 하였다. 이것은 절강과 일본이 가까운 점을 빌어 그들이 귀국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순치 2년(1645) 11월, 청조 황제는 조선의 국왕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다

“前 有日本國民人一十三名泛舟海中，飄泊至此，已敕所司周給衣糧。念其父母，妻子遠隔天涯，深用憫惻，茲命隨使臣前往朝鮮，至日本可備船隻轉送還鄉，仍移文宣示俾彼國君民，共知朕意”⁷¹

이로써 일본인이 중조간의 사신과 함께 조선으로 향했고 조선이 책임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내게 한 것이다. 후자도 마찬가지로 청조 전반기 중일 정부간의 대표적인 교류 사례로 이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중일간 직접적 교섭이 아닌 조선을 중개자로 하였다. 조선은 중일간의 소통 중개의 역할로 중당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당시에 평면화된 ‘동아시아’

⁶⁷ 《흙정팔기통지》 제165권.

⁶⁸ 《황조통지》 제93권.

⁶⁹ 《황조문헌통고》 제283권.

⁷⁰ 《성조인황제성훈》 제59권.

⁷¹ 《황조문헌통고》 제295권.

한중일간의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고 정보 소통은 층층히 전송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청조는 조선과 일본의 접촉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였다. 건륭13년(1748), 조선 국왕은 일본에 새로이 임명된 관백을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함에 청나라 자문을 구하였는데 “該國照例通使”⁷²의 답을 받았다. 그러나 청조는 일본에 대하여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옹정6년(1728) 8월, 절간 총독관 순무사 이위가 상소하였는데 일본이 내륙인들을 불러 일본으로 구치하여 활쏘는 법을 가르치고 배의 제작, 예규행적을 설명하였다고 알렸다. 이를 조사한 인원들은 국내 가족들도 행적이 의심이 가고 “不無窺伺，乘有空隙，欲為沿海搶掠之謀”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청은 명조와 다르게 연해에 수군이 별처럼 사방에 분포되어 있고 전함 운전 실력도 능통하고 관병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고 있으나 비밀리 해관 관원이 왕래하는 일본 상인, 선함 화물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⁷³ 청조는 이 때문에 동남 연해에 대한 경계 감찰을 더욱 강화하였다.

옹정 6년 9월 이위가 올린 하나의 상소문에서도 당시 청조 정부의 일본에 대한 틀 일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但訪聞得伊等皆貪夷人倭照，爭相貿易，惟恐失其歡心，措照不發，故凡有指名求索之處，無不依從。若到彼國，亦與別商同在土庫，惟請去之教習人等，則另居他處，其設謀畫計，皆知細底，而商等不過得其大概，多不敢言也。又聞寧波醫生朱來章，向曾在彼醫痊倭王，厚贈而歸，現領倭照貿易。臣今託病，令人赴蘇密尋。近複訪得，倭夷著閩商魏德卿欲請福清縣黃栢寺方丈僧人前往，約在九月終到普陀下船，以為料無人知，亦差員改裝，預往普陀等候。果否到來，查實喚訊。俟此數處之人到後，如探得彼中底裏，即當飛馳奏覆……以所聞倭夷於中國土產，多所未有，其仰藉於內地貨物者甚殷，若驟加禁絕，則用度不便，恐致多事。是以康熙五十四年，夷人創立長崎譯司，倭照給與內地商人領運。彼時督撫與海關意見不同，聖祖天地度量，特賜包容，聽從其便。今莫如仰遵皇上諭旨‘撫外之道，固本防患’二語，仍循舊例，照常貿易，惟有嚴加稽察奸弊，實力整飭海防水陸，以備不虞，則天朝之威德，自足震懾邪心而不敢肆其狡志矣。至於噶喇叭呂宋等處，皆西南洋貨物馬頭……雖紅毛亦稱狡悍，然與噶喇叭等處皆與中土尚遠，非如東洋日本之近而宜防，故從前聖祖定例，西南洋許其內販，而東洋禁其自來，亦因形勢不同之故也。若朝鮮久沐本朝天恩，職貢惟謹。然東洋獨日本為強，鄰國無不懼之。朝鮮因其相近，自然與之往來交好，親密不問可知……”⁷⁴라 하였다. 이위가 상주한 내용 전부가 사실이라 단언할 수 없으나 청조 전기 조정에서 일본에 대하는 태도, 방침 및 조선, 일본, “적모”의 차이에 따른 고려가 보인다. 즉 1. 일본과의 민간 무역 활동이 인정되었다. 2. 남양의 서방 상인들과의 무역이 인정되었으나 일본에서 중국으로 와서 무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3. 조선과 일본이 친밀한 왕래가 있다는 것을 묵인하였지만 일본에 대한 고도의 경계는 유지하였다. 이상의 시각에서 당시 “동아시아” 질서 구조는 단순한 “조공체제” 혹은 “조공무역체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이 비록 일본과 사절 왕래와 무역관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을 경계하였고 때로는

⁷² 《옹정대정회조례》 제94권.

⁷³ 《세종선황제주필어지》 제174권 8편.

⁷⁴ 《세종선황제주필어지》 제174권 8편.

일본의도를 과장하여 청조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순치 7년 정월과 같이 조선국왕은 청조에 보고 하길, “據議政府報雲：倭子情形可畏。去年秋間，鞭撻使臣，出言不遜。驛館倭使，常以密書示通事，言辭甚謬。我國每年所與糧米，前皆運至屯中，今堆積驛館，似有所待。又雲：伊國叛賊，雜入漢商船內，出沒沿海地方，遣使我國，言洋船若漂至，即行執送。今有漢人船漂至，不送於咫尺倭館，直為解送上國。其蓄憾於我，比前必甚。前後事端，已成間隙。綢繆之計，不可不早等語。臣竊念小邦自壬丁年之變，各處城郭皆壞，兵器不整者蓋十有餘年。今觀狡倭情形，萬分可慮。倘遇警急，無計奈何，惟恃天朝援兵。念東萊府距王京無十日之程，王京距帝都甚遠。當小邦奏請天朝發兵之時，有何城郭器械可恃，以待援兵？今欲修築訓練，以為守禦之備，因前有上諭禁止，不敢專擅。伏祈皇上體先皇帝存亡繼絕之仁，法古聖人先事預防之計，鑒察本內事情，指示勝算，使小邦得免殘破之患。幸甚”라 하였다.⁷⁵ 청황제는 조선 국왕이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사실에 반하는 과장된 보고를 하였다고 엄하게 꾸짖었다.⁷⁶ 그 후 과연 그러한 일은 없었다.

3. 결론

‘아시아주’라는 개념은 ‘오대주’설과 함께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명조 말기에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다. 지구구체설과 오대주설이 전해진 뒤 약 두 세기 동안 중국인들은 이러한 개념이나 지식에 대해 계통적이고 엄밀한 추구가 없었으며 단지 의문을 남겨 둔채 참고해 두는 태도를 취했다. 사실 명 말기에서 청조 전기에 중국의 지식층, 사상계에서는 유럽의 지식에 대해 화기 제조를 포함한 직접적인 실용가치가 있는 지식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중국문화는 실용을 중하게 생각하고 순수 이론, 지식에 눈을 돌리지 않은 문체가 조금 읽혀질 것이다. 글로벌화의 도래 이전에 실용성과 직접 경험에 의지할 뿐이었던 중국인에게 ‘오대주’라는 지식의 진위여부는 중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글로벌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며 비로소 명확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 되었다. 때문에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기까지 청조의 통치자들에게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조가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할 수는 없다. .

청조 전반기의 주변관계는 정치적 각도에서 보면, 책봉관계였으며 경제적 각도에서 본다면 무역관계이다. 전자는 공적이고 제도화되었음에 비해, 후자는 공사가 혼재되어 있다. 학계에서 주로 ‘조공체제’⁷⁷를 사용하여 제국시대시대 후기 중국의 대외관계를 정리하나 이는 ‘조공’의 의미가 확대되어 ‘조공’을 둘러싼 자연정치의 범위가 오해된 것이다. 청의 국제 관계 중 제일 긴밀했던 국가는 조선, 그 다음으로는 류큐, 베트남 등 ‘책봉’국가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조공’국가였다. 책봉, 조공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무역국들은 자연스레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마지막 종류에 속한다. 청조 정부의 각도에서 본다면 ‘동아시아’는 하나의 국제관계 질서체계가 아니다. 근년 익숙히 사용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청조

⁷⁵ 《청세조실록》 제47권, 순치7년 정월 을축.

⁷⁶ 《청세조실록》 제47권, 순치7년 정월 임오; 《황조문헌통고》 제295권.

⁷⁷ [미]페이뱅크 저, 두계동 번역: 《중국의 사계질서-전통 중국의 대외관계》, 북경:중국사회과학출판사,2010년,제1페이지 참조.

전반기까지 거슬러 오르면 당시에는 평화시기로 주로 민간에서 행하였던 무역활동이 상호 연계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일간 국교는 없었다. 청조 전반기 중일간의 왕래 패턴에 대하여 한 학자는 이를 ‘침묵의 외교’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외교’라는 개념을 모호화하는 방법이다. 외교는 국가간 서로 사절을 통해 왕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외교가 없다고 해서 국가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중일간의 관계는 평화로웠으며, 이러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당시 정부 간의 외교관계를 재정의할 필요는 없다.

갈조광葛兆光 선생은 ‘아시아’를 하나의 역사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아시아로서 서로간 인정한 아이덴티티, 공동의 역사근원, 공통적인 ‘타자’에 대한 문화, 지식, 역사 혹은 정치 공동체가 생긴 적이 있었던가. 아시아 서부와 중부의 이슬람 국가를 논외로 해도,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동아시아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논외로 해도, 이른바 ‘동아시아’에서도 중국, 조선, 일본 사이에서 ‘공동공간’은 언제 존재하였는가”⁷⁸.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진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4월29일

⁷⁸ 갈조광 : 《宅茲中國》, 북경 : 중화서국, 2011년, 제170-171페이지.